세무기초와 절세전략

www.nts.go.kr



www.hometax.go.kr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사업자의 세금 신고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매입세액	해당	해당없음
소득세	수입-비용	해당	해당
원천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해당	해당
	지급명세서 제출	해당	해당
사업장현황신고		해당없음	해당

수입 · 지출과 세금관계

	구 분	총금액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
	매출	11,000,000	1,000,000	10,000,000	
수입	정부지원금 신용카드발행공제등	500,000	해당 無	500,000	
	1. 수입 계	11,500,000	1,000,000	10,500,000	
	매입원가	5,500,000	500,000	5,000,000	
	급여	2,000,000	해당 無	2,000,000	55,000
	복리후생비	275,000	25,000	250,000	
71.5	임차료	1,100,000	100,000	1,000,000	
지출	겁대비	250,000	불가	250,000	
	전력비	110,000	10,000	100,000	
	감가상각비	350,000	해당 無	350,000	
	이자비용	150,000	해당 無	150,000	
2. 지출 계		9,735,000	635,000	9,100,000	
	차액(1-2)	1,765,000	315,000 (부가세 납부)	1,400,000 (사업소득금액)	55,000 (원천세 납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 발급의무: 건당 10만원 이상,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무기명 발행 010-000-1234로 발행
- 신고포상금 : 미발급금액의 20% (건당 50만원, 동일인 연간 200만원 한도)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일반유흥주점(『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
음식점업	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 밖의 업종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 관련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 임대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2016.7.1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의료용 기구
추가업 종	소매업
2017.7.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추가업종	및 중개업
2020. 1.1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추가업종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운영업
2021.1.1	전자상거래 소매업 ¹), <mark>두발 미용업²),</mark> 의복소매업, 신발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
추가업종	웨어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소매업

- 1)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 2) 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 헤업샵에 적용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국세청은 세원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거래대금과 직원급여 등의 인건비, 그리고 임차료 등 수입과 비용을 개인용도의 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구 분	내 용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중 <mark>복식부기의무자</mark> 및 전문직 사업자
신고기한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방법	• 사업장관할세무서 접수 및 홈텍스에서 신고 가능
사업용계좌 거래범위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미신고시 불이익	① 가산세 부과: 미개설· 미사용한 거래금액의 0.2% ② 공제·감면의 해택 배제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사항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0%

△ 매입세액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경감 · 공제세액

- 전자신고: 1만원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연간한도 1,000만원(1.3%)
 - → 제외대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초과)

= 납부할 세액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정의	모든사업자 가능	년 8,000 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4,800 만원)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mark>공급대가 <i>x</i> 업종별부가가치율 <i>x 10%</i></mark>
매입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0.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있음	발급할수 없음 (단, 년 4800 만원 이상인 경우 발급의무있음)
환급세액	환급	환급 안됨
납부면제	해당사항 없음	공급대가 4,800 만원 미만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별도금액

•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간이과세자 업종별부가가치율

소매.음식업: 10%제조.숙박: 20%

•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계산사례

■ 일반과세자(도·소매업)

구분		법인	<u> </u>	개인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세금계산서	5,000,000	500,000	5,000,000	500,000
-11 - 11 01	신용카드 등	45,000,000	4,500,000	45,000,000	4,500,000
매출세액	기타	10,000,000	1,000,000	10,000,000	1,000,000
	①계	60,000,000	6,000,000	60,000,000	6,000,000
	세금계산서	48,000,000	4,800,000	48,000,000	4,800,000
매입세액	신용카드 등	3,000,000	300,000	3,000,000	300,000
	②계	51,000,000	5,100,000	51,000,000	5,100,000
③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		643,500
④ 납부세악	(1-2-3)		900,000		256,500

※ ③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49,500,000 * 1.3% = 643,500원

부가가치세 계산사례

■ 간이과세자(도·소매업, 업종별부가율 10%)

구 분		공급대가	세액
	세금계산서	5,500,000	55,000
ᄜᄾᄖᄱ	신용카드 등	49,500,000	495,000
매출세액	기타	11,000,000	110,000
	①계	66,000,000	660,000
	세금계산서	52,800,000	264,000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3,300,000	16,500
	②계	8,580,000	280,500
③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379,500
④ 납부세액(①-②-③)			_

• 매출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율 * 10%

• 매입세액공제 : 공급대가 * 0.5%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49,500,000 * 1.3% = 643,500원

매출관리

■ 매출자료 확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홈텍스에서 조회 종이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원본 보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 여신금융협회(www.cardsales.or.kr) 및 홈텍스 조회 • 카드단말기 회사에서 조회
	현금매출	• 현금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발급분 제외)
전자상거래 등		※ 관리자페이지〉부가세 신고자료 조회 오픈마켓(11번가,G마켓, 옥션 등), 쇼셜커머스(쿠팡,티몬,위메크 등) 매출자료 개인쇼핑몰(자사홈페이지) 모바일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제로페이 및 카카오페이 매출내역
유튜버		• 구글 애드센스 월별 지급내역 + 외화입금증명서, 외화수표(사진캡쳐본) 등 + 슈퍼챗라이브및 채널맴버십 수입내역
세 율	수출업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우체국소포영수증(EMS), 송장(invoice) 및 관련 계약서 등

매입관리

■ 매입자료 확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홈텍스에서 조회 종이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원본 보관
	• 사업용신용카드는 홈텍스에서 조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 기타신용카드는 전표 보관 및 각 카드사에 자료 요청(부가세신고용)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홈텍스에서 조회

매입관리

사업용신용카드로 매입부가세 공제 받는 방법



매입관리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과세사업자(일반,간이)가 부가세 면세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 한도]

구 분			공제율
음식	개인	•	8/108 <mark>9/109(연매출4억원이하)</mark>
식 업	인 펍	•	6/106
	과세유흥업소	•	2/102
제조업		•	4/104
0 .	외 제조업	•	2/102

구분	과세표준(6개월)	공제한도		
	ᅿ <u>에</u> 표군(0개월)	음식업	기타	
개인	1억원 이하	65%	55%	
	2억원 이하	60%		
	2억원 초과	50%	45%	
법인		40%		

■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사례

예) 일반 음식업점 2기(7~12월)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60,000,000, 과세표준 95,000,000

- 한도액: 95,000,000 X 65% = 61,750,000원 (Min [60,000,000원, 61,750,000원]

- 공제액 : 60,000,000 X 9/109 = **4,954,128원**

■ 증빙서류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이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안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01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형차의 구입·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03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는 공제)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 (단,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예외) 간이과세자로 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단,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예외)

인테리어비용 세금계산서 받아야 할까

인테리어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함 - 매입 부가세 환급, 감가상각비 손비 처리[소득세 절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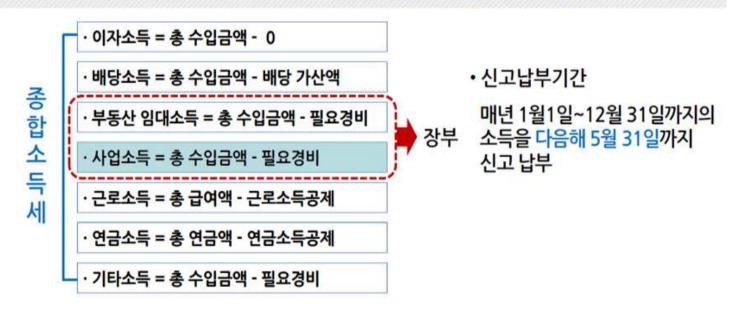
■ 세금계산서 못 받았을 경우 불이익

예를들어 5,000만원의 인테리어를 무자료로 처리했다면, 매년 1,000만원(=5,000만원/5년)의 감가상각비가 누락된 셈이고, 매년 종합소득세율 15%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연간 150만원, 5년간 750만원의 세금할인을 포기한 셈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소득의 종류

1/1~12/31까지 개인이 벌어들인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사업소득금액 계산

장부기장

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X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주요경비)(총수입금액X기준경비율)

매입, 임차료, 인건비

- ※ 단순·기준경비율 조회(홈텍스-조회.발급-기타조회)
 - ▶한식업 (단순경비율 89.7%, 기준경비율 7.4%)
 - ▶보습학원 (단순경비율 79.2%, 기준경비율 20.1%)

신고유형 판단기준

	장부 기장 사업자			추계신고자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기러지버	기즈거비ㅇ	디스커피오
10 2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외부조정 대상자	자기조정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 과세기간	해당과세기간		직전과세기간		직전과	세기간
농업및임업, 광업,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10억원 이상자	6억원 이상자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건설 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및 보험업 등	5억원 이상자	3억원 이상자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 사회 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 동관련 서비스업, 수리및 개인서비 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3.5억 이상자	1억5천만 원 이상자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 당해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

겸업사업자 환산수입금액 계산

■ 겸업사업자 환산수입금액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수입금액 x 주업종에대한기준금액/주업종외기준금액)

■ 사례

사업장별	A(부동산임대)	B(제조)	C(도매)	합계
수입금액	10,000,000	100,000,000	50,000,000	160,000,000
주업종판단	주업종 외	주업종	주업종 외	

■ 주업종 화산 수입금액 계산내역

1억 + [1천 * (1억5천/7천5백)]+ [5천 * (1억5천/3억)] = 145,000,000원

환산한 주업종(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150,000,000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 이다

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결정세액
(+) 가산세
= 납부할세액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특별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국민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1.00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40만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40만원
5억 원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계산사례_장부작성이 세부담이 낮은 경우

업 종: 음식/한식 (단순경비율 89.7%, 기준경비율 7.4%)

• 수입금액: 2020년 (1억8천만원), 2019 (1억원)

• 경 비: 주요경비 (1억2천만원), 기타경비(4천5백만원)

부양가족: 배우자(소득없음), 자녀1명(20세미만)

구 분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①총수입금액	180,000,000	180,000,000	180,000,000
②주요경비	120,000,000	120,000,000	증빙없음
③기타경비	45,000,000	45,000,000	13,320,000
④소득금액(①-②-③)	15,000,000	15,000,000	ⓑ 48,204,000
⑤소득공제	4,500,000	4,500,000	4,500,000
⑥과세표준(④ -⑤)	10,500,000	10,500,000	42,180,000
⑦산출세액	630,000	630,000	5,475,600
⑧기장세액공제 (⑦*20%)	126,000		
⑨무기장가산세 (⑦×20%)			1,095,120
⑩기납부세액			

504.000

630.000

6,570,720

❖ 기준경비율대상자 소득금액한도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한도 Min[@, (b]

장부기장

추계신고

- ②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복식부기의무자 3.2배)

(a) 166,680,000 = 180,000,000 -0- (180,000,000*7.4%)

① 납부세액((7)-(8)+(9)-(10)

 \checkmark (b) 48,204,000 = [180,000,000 - (180,000,000 *89,7%)] * 2.6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시

▶무기장가산세: 직전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사업자

계산사례_추계신고가 세부담이 낮은경우

업 종: 제조/공예 (단순경비율 90.4%, 기준경비율 11.2%)

• 수입금액: 2020년 (5천원), 2019년 (4천만원)

경 비: 주요경비 (2천만원), 기타경비 (5백만원)

부양가족: 없음

구 분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①총수입금액	50,000,000	50,000,000	50,000,000
②주요경비	20,000,000	20,000,000	증비없음
③기타경비	5,000,000	5,000,000	5,600,000
④소득금액(①-②-③)	25,000,000	25,000,000	© 12,480,000
⑤소득공제	1,500,000	1,500,000	1,500,000
⑥과세표준(④-⑤)	23,500,000	23,500,000	10,980,000
⑦산출세액	2,445,000	2,445,000	658,800
⑧기장세액공제 (⑦*20%)	489,000		
⑨무기장가산세 (⑦ *20%)			
⑩기납부세액			
⑪납부세액(⑦-⑧+⑨-⑩)	1,956,000	2,445,000	658,800

장부기장 : 간편장부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대상자 소득금액한도

*한도 Min[@,**)**]

-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복식부기의무자 3.2배**)

- (a) 44,400,000 = 50,000,000 0 (50,000,000 * 11.2%)
- \checkmark (b) 12,480,000 = 50,000,000 (50,000,000*90.4%) * 2.6

계산사례_단순경비율(단일소득)

업 종: 서비스/소프트웨어 (단순경비율 73.9%, 기준경비율 26.4%)

• 수입금액: 2020년 (5천원), 2019년 (없음)

• 경 비: 증빙없음

• 부양가족: 없음

장부기장 : 간편장부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구 분	단순경비율
①총수입금액	50,000,000
②주요경비	36,950,000
③기타경비	_
④소득금액(①-②-③)	13,050,000
⑤소득공제	1,500,000
⑥과세표준(④ -⑤)	11,550,000
⑦산출세액	693,000
⑧기장세액공제 (⑦*20%)	
⑨무기장가산세 (⑦*20%)	_
⑩기납부세액	_
⑪납부세액(⑦-⑧+⑨-⑩)	693,000

계산사례_기준경비율(복수소득)

업 종: 서비스/소프트웨어 (단순경비율 73.9%, 기준경비율 26.4%)

• 수입금액: 2020년 (5천원), 2019년 (3천만원)

• 경 비: 주요경비(2,900만원) 기타경비(1,285만원)

• 부양가족: 없음

장부기장 : 간편장부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

구 분	사업소득 (기준경비율)	기타소득 (강사료)	종합소득
①총수입금액	50,000,000	20,000,000	
②주요경비	29,000,000	(60%)12,000,000	_
③기타경비	12,850,000		_
4소득금액(①-②-③)	8,150,000	8,000,000	16,150,000
⑤소득공제			1,500,000
⑥과세표준(④-⑤)			14,650,000
⑦산출세액			1,117,500
⑧기장세액공제 (⑦*20%)			
⑨무기장가산세 (⑦∗20%)			
⑩기납부세액			*1,600,000
⑪납부세액(⑦-⑧+⑨-⑩)			▲482,500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의 경우 종합소득 합산여부 선택 가능

* 기납부세액 1,600,000원은 기타소득 원천징수(8%)분임